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78호 2023. 12. 6. (수)

고 시

- 제2023-131호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 준공인가 고시 ---2
- 제2023-1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구역 고시 ---3
- 제202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5

공 고

- 제2023-136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열람공고(북구 덕천동 산45-16번지 일원) ---7
- 제2023-1390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공 람										
--------	--	--	--	--	--	--	--	--	--	--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131호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 준공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59호(2017.8.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78호(2018.5.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69호(2018.1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33호(2019.5.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제2021-60호(2021.6.2.)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9-1번지 일원의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명칭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9-1번지 일원 (구역면적 : 28,912.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덕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송태욱)
 -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84, 2층 (덕천동, 성암빌딩)

4. 준공인가의 내역

가. 건축시설(공동주택)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구역면적	28,912.1㎡	대지면적	25,346.1㎡
건 폐 율	24.38%	건축면적	6,179.8032㎡
용 적 률	298.80%	연 면 적	110,655.1517㎡
최고높이	74.8m	동수/층수	8개동/지하2층~지상26층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세 대 수	795세대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구 분	구 분	위 치(기점, 종점)	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2-494	덕천동 377-17번지, 359-1번지	B=15~16m, L=108m
	중로 3-421	덕천동 376-13번지, 371번지	B=12m, L=98m
정비기반시설(도로)	도-1	덕천동 360-19번지 일원	L=260m, A=778.3㎡
도시계획시설(공원)	소공원	덕천동 360-17번지 일원	A=746.6㎡
	소공원	덕천동 376-13번지 일원	A=704.6㎡

5. 준공인가일 : 2023. 11. 29.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1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구역 고시

「주차장법」 제4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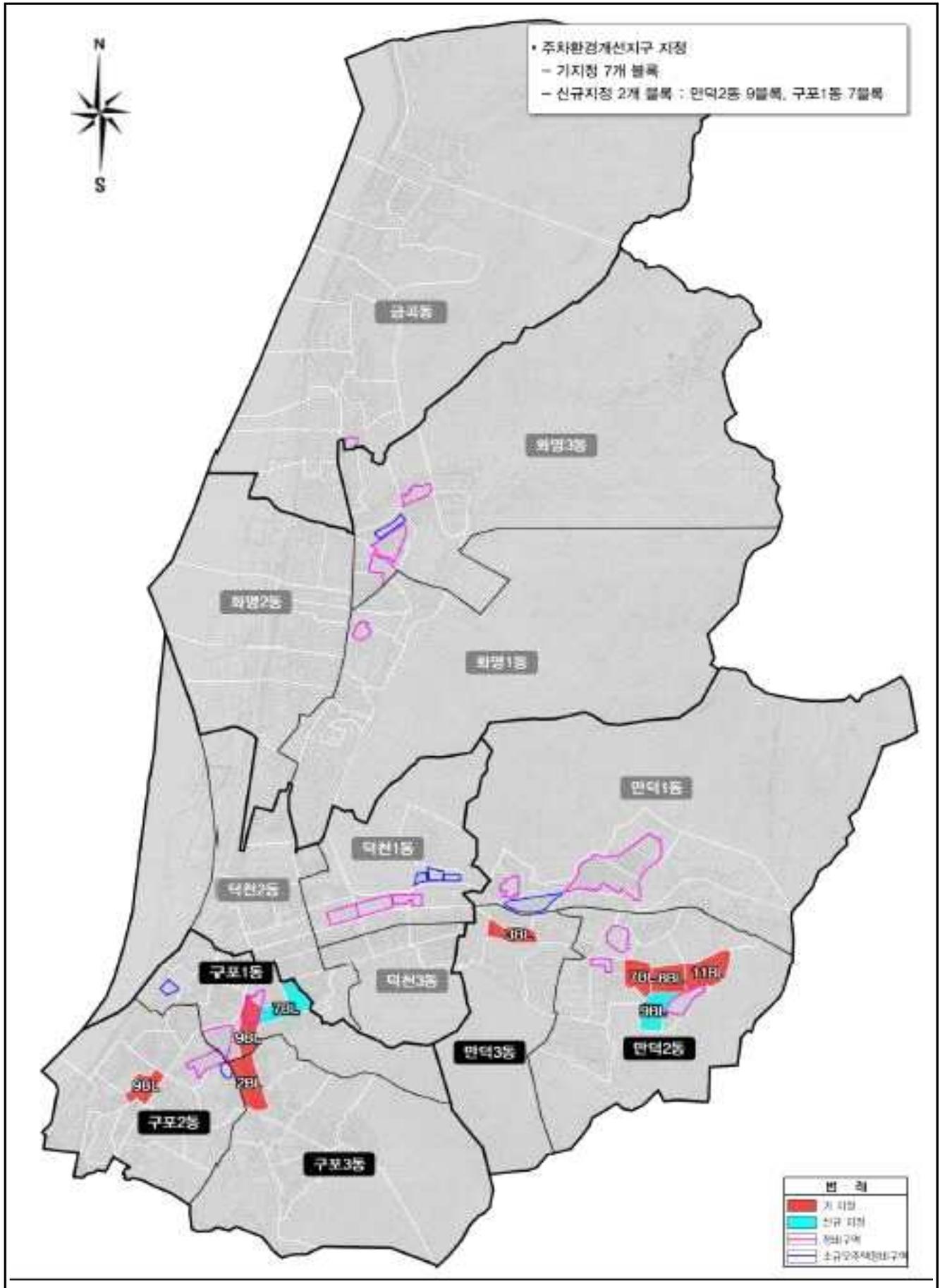
- 선정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불법 주차율이 높은 지역
(단, 상업지구, 각종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 제외함)
- 지정구역: 9개 구역(기존 7, 신규2)

구분	행정동-구역	비고
신규	구포1동 7구역	구포 대구연립 일원
	만덕2동 9구역	만덕도서관 동측 일원
기존	구포1동 9구역	모분재로16번길 일원
	구포2동 9구역	구포2치안센터 일원
	구포3동 2구역	경덕주유소 일원
	만덕2동 7구역	만덕도서관 북측 일원
	만덕2동 8구역	백양중학교 주변
	만덕2동 9구역	백양중학교 동측 일원
	만덕3동 3구역	백산유치원 일원

- 위 치 도: 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열람 가능(상세위치도)
- 용 도: 주차장 확충 사업비 우선 투자에 활용
-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붙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구역 위치도 1부.

[붙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구역 위치도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I.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
계	734,174	698,236	35,938	5.15
일 반 회 계	716,467	680,515	35,952	5.30
특 별 회 계	17,707	17,721	△14	△0.08
의 료 급 여 기 금	1,427	1,427	0	0
지 하 수 관 리	60	54	6	11.11
주 차 장	16,220	16,240	△20	△0.12

II. 일반회계 예산(개요)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35,952	계	35,952
지방세	△3,861	인건비	△1,724
세외수입	3,966	물건비	△625
지방교부세	2,872	경상이전	7,802
조정교부금등	20,913	자본지출	8,616
보조금	10,873	내부거래	4,9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89	예비비 및 기타	16,903

III. 특별회계 예산(개요)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14	계	△14
지하수관리	6		6
◦ 보전수입등	6	◦ 물건비	△6
		◦ 자본지출	△2
		◦ 내부거래	14
주차장	△20		△20
◦ 보전수입등	△20	◦ 물건비	△58
		◦ 경상이전	△10
		◦ 자본지출	47
		◦ 예비비 및 기타	1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36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열람공고(북구 덕천동 산45-16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산45-1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미래전략실 ☎051-309-5404)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3. 12. 6. ~ 2023. 12. 20.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미래전략실 ☎051-309-5404)

부산도시계획아고라 홈페이지(www.busan.go.kr/depart/agora0601)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A	북구청	공공 청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산45-16번지 일원	-	증)30,363.5	30,363.5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사항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신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1항에 따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제1항에 따름	-	

○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A	북구청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30,363.5㎡	• 노후화된 시설, 행정서비스 저하, 구민 불편 등 현 북구청사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북구청을 이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코자 함

라. 관계도서 및 상세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390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위탁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혜택 부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상위법령에 따른 위탁운영 사항 반영(안 제3조, 제11조)
- 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자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아동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 연 락 처 : 전화 051-309-4352, 팩스 051-309-511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등

부산광역시 복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복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위탁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④ (생략)</p> <p>제11조(위탁 운영) ① (생략)</p> <p>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행규칙 제 24조제7항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3조(위탁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탁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이용료등의 감면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215 1214 785 2042"> <thead> <tr> <th>구분</th> <th>대상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50% 감면</td> <td>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td> </tr> <tr> <td>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td> </tr> <tr> <td>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td> </tr> <tr> <td></td> <td>라. 2000년 이후 출생자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td> </tr> <tr> <td></td> <td>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td> </tr> <tr> <td></td> <td>3.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 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자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2000년 이후 출생자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 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	<p><별표 2> 이용료등의 감면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817 1214 1386 2042"> <thead> <tr> <th>구분</th> <th>대상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50% 감면</td> <td>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td> </tr> <tr> <td>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td> </tr> <tr> <td>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td> </tr> <tr> <td></td> <td>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td> </tr> <tr> <td></td> <td>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td> </tr> <tr> <td></td> <td>3.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 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자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 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
구분	대상자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2000년 이후 출생자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 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																								
구분	대상자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개인 회원에 한하여 10% 이내의 감면을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